

하남시 고시 제2025-167호

도시관리계획(현안2지구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1. 하남시 도시관리계획(현안2지구 지구단위계획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(변경) 하고, 같은법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. 관련 도서는 하남시청 도시정책과(☎031-5182-1467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, 토지이용(<http://eum.go.kr>)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.

2025. 10. 21.
하 남 시 장

㉠ 현안2지구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

- 가.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 : 변경없음
 나. 용도지역·용도지구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 : 변경없음
 다.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 : 변경없음
 라.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 : 변경없음
 마. 건축물에 대한 용도·건폐율·용적률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조서 : 변경사항에 한함
 1) 중소기업전용단지

도면 번호	위치	구분		계획내용
-	중소1, 중소2	용도	기정	· 공동주택 중 기숙사 · 제1·2종 근린생활시설(단, 단란주점, 안마시술소 제외) · 교육연구시설(학교시설 제외) ·판매시설 ·운수시설 ·업무시설(오피스텔 제외) · 공장(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별표4제2호 차목 (1) 내지 (6)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) ·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 · 「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」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용시설 · 창고 ·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(「대기환경보전법」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·저장소를 제외한다) · 자동차관련시설(폐차장 제외)
			변경	· 공동주택 중 일반기숙사, 임대형기숙사 · 제1·2종 근린생활시설(단, 단란주점, 안마시술소 제외) · 교육연구시설(학교시설 제외) ·판매시설 ·운수시설 ·업무시설(오피스텔 제외) · 공장(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별표4제2호 차목 (1) 내지 (6)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) ·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 · 「소프트웨어 진흥법」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용시설 · 창고 ·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(「대기환경보전법」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·저장소를 제외한다) · 자동차관련시설(폐차장 제외)
		불허용도		·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
		건폐율		· 60% 이하
		용적률		· 400% 이하
		높이		· 평균 10층 이하

- 바.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 : 변경없음